

미술학부 졸업작품 내규

제 정 :1984년 3월 2일(회화과)
1차 개정:1996.10.24.(미술학부)
2차 개정:2010.03.02
(회화과-동양화,서양화전공)
3차 개정:2014.03.02.
(한국화,서양화,기독교미술전공)
4차 개정:2019.09.17
5차 개정:2021.09.14.
6차 개정:2022.03.28.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미술학부(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아트미디어전공)의 졸업작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작품전 지도교수) 졸업작품 지도교수는 학부장이 전공주임(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졸업작품전 심사위원 및 심사)

1. 졸업작품전에 발표작품은 사전에 전공별로 심사에 통과한 작품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학부 및 전공 교수 3인 내외로 한다.
2. 졸업작품 심사는 전공의 졸업작품 구분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조(졸업작품제작기준) 졸업작품의 제작기준은 각 전공별로 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한국화전공

구분	내용	규격
1)수묵표현	실경표현, 산수화, 수묵표현 중심에 적합한 작품- 수묵/담채의 표현력과 이해	100호 기준(변형, 설치가능)
2)채색표현	채색화 표현기법의 이해와 표현의 적정성, 채색화제작의 기본에 적합한 작품.	100호 기준(변형, 설치가능)
3)창작·인물화표현	공필 인물화 또는 한국화에 대한 이해와 재료를 바탕으로 한 순수 창작작품(택 1)	50호 이상(변형, 설치가능)

2. 서양화전공

구분	내용	규격
평면	유화 또는 아크릴물감으로 제작한 회화작품	100호 기준(2점 이상)
입체 또는 설치	평면작업과 연계한 작품 또는 입체, 설치작업	가변크기
영상미디어	빔 프로젝트 또는 모니터를 이용한 작업	싱글채널, 다채널가능

※평면회화 2점 필수, 입체·설치 또는 영상미디어(선택) 작품1점

3. 아트미디어전공

구분	내용	규격
회화	주제에 부합한 회화작업 (4영역 모두 통과시 졸업가능)	100호 이상(2점 이상)
스테인드글라스	주제를 설정하고 건축물에 맞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제작(4영역 모두 통과시 졸업가능)	20호 내 자유변형(1점 이상)
영상미디어	주제에 부합한 영상작업(4영역 모두 통과시 졸업가능)	1분이상(mp파일)
설치조형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주어진 공간의 이해를 통해 자유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한다(4영역 모두 통과시 졸업가능)	설치가능

제5조(졸업작품개최)

1. 졸업작품전 개최는 전공주임(책임)교수의 지도로 학생대표와 협의하여 개최장소를 선정한다.
2. 전시개최 기간은 전공주임(책임)교수가 정하며 통상 06일 이상으로 한다.
3. 졸업작품전 전시도록(자료집)은 졸업예정자의 대표작품이 1인 1점 이상 수록되어야 하며 수록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공주임(책임)교수가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공주임(책임)교수가 학부장과 단과대학장과 협의하여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